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16 |
|----------|-----|

제출년월일 : 2016. 3. 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상 통일안보상 부문을 신설하여 통일 안보의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일안보상 개인부문, 통일안보상 단체부문 신설(안 제4조제1항)

나. 위촉직 위원 수의 특정 성 편중 방지(안 제8조제2항)

-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 위원장의 권한 축소(안 제8조제6항)

- 가부동수인 때 부결 처리

다. 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8조제4항))

라. “위원의 제척 등” 신설(안 제9조)

마.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안 제13조제1항)

- 조문 제목(이중표창의 금지 등)과 내용 일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자치법규 정비)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2. 5. ~ 2016.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 반영(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의견 일부 반영

-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 반영

- “장한 어머니상”을 “평등가족상”으로 및 “효행상” 삭제 권고 미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남구 구민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로 한다.

제2조 중 “강남구 구민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개 부분”을 “13개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통일안보상 개인부문

13. 통일안보상 단체부문

제4조제2항 중 “부분”을 각각 “부문”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모범납세상 및 아름다운 기부상”을 “모범 납세상, 아름다운 기부상 및 통일안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통일안보상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통일 안보 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제8조제2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분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부분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6항 전단 중 “위원 과반수 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항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중 “부분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을 “부분별 관계 기관 및 관계 단체장”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있다”를 “없다”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u>강남구 구민의 상</u>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상대상) <u>강남구 구민의 상</u>(이하 "구민의 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은 강남구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이어야 한다.</p> <p>제3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u>강남구 구민의 날</u> 행사 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u>구청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p> <p>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의 상 종류는 다음과 같이 <u>11개</u> 부분으로 한다.</p> <p>1. ~ 11.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 <p>제1조(목적) ----- ----- ----- ----- <u>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u> ----- ----- ----- -----.</p> <p>제2조(수상대상) <u>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u> ----- ----- ----- -----.</p> <p>제3조(시상시기) ----- <u>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u> ----- -----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p> <p>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 <u>13</u> ----- <u>개</u> 부분-----.</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통일안보상 개인부문</u></p> <p><u>13. 통일안보상 단체부문</u></p> |

② 국민의 상은 각 부분마다 1
명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
분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대상은 용감한 국민상,
장한어머니상, 효행상, 봉사
상, 모범 청소년상, 모범납세
상 및 아름다운 기부상 수상
대상자 중 가장 공적이 우수
한 경우

2. ~ 8. (생략)

<신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1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은 강남구 부구청장, 강
남구의회 사무국장, 공보실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각 부분별로

② ----- 부분-----

----- 부
분-----.

제5조(심사기준) -----
-----.

1. -----

----- 모범 납세상,
아름다운 기부상 및 통일안보
상 -----
-

2. ~ 8. (현행과 같음)

9. 통일안보상은 안보관이 투철하
고 통일 안보 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
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

③ -----

----- 부분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생략)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재적위원 과반수-----
---- 과반수-----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항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 |
|--|---|
| | <p>③ <u>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u></p> |
| <p><u>제9조(수상후보자의 추천)</u> 수상 후보자는 제4조에 따른 각 <u>부분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u> 또는 구민 15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p> | <p><u>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u> ----- ----- 부 ----- 문별 관계 기관 및 관계 단체장 ----- -----.</p> |
| <p><u>제10조</u> (생략)</p> | <p><u>제11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p> |
| <p><u>제11조</u> (생략)</p> | <p><u>제12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 |
| <p><u>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등)</u> ① 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u>있다.</u></p> | <p><u>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등)</u> ① ----- ----- <u>없다.</u></p> |
| <p>② (생략)</p> | <p>② (현행과 같음)</p> |
| <p><u>제13조(상의 대리수상)</u> 이 상을 직접 받을 <u>자가</u>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p> | <p><u>제14조(상의 대리수상)</u> ----- ----- <u>사람이</u> ----- ----- ----- ----- -----.</p> |
| <p><u>제14조(수당)</u>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 <p><u>제15조(수당)</u> ----- ----- <u>범위에서</u> ----- -----.</p> |
| <p><u>제15조 ~ 제16조</u> (생략)</p> | <p><u>제16조 ~ 제17조</u> (현행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p>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는 단순 개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자치행정과 행정7급 임정빈(3423-5194)